

『구미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08년 11월 21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08년 11월 21일

라. 상정일자 : 2008년 12월 18일

제139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국장 김 수 복

나. 제안이유

- 4단지내의 양포동과 산동면에 대한 행정구역 경계를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,
- 『e-편한세상』 과 『우미린』 등 2개 아파트 1,822세대가 산동면과 양포동으로 분리되어 있어, 행정구역 사전 조정을 통해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

다. 주요내용

- 산동면(신당리, 봉산리)과 양포동(옥계, 구포, 금전)간의 행정구역경계조정
- 산동면 : 종래 산동면중 옥계 17B, 18B, 26B, 27B 으로 편입되는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

- 구포동 : 종래의 금전동중 23B으로 편입되는 지역과 종래의 구포동중 금전동의 24B, 25B으로 편입되는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
- 금전동 : 산동면의 26B, 27B중 금전동으로 편입되는 지역과 종래 금전동의 23B에서 구포동으로 편입되는 지역을 제외하고, 구포동중 24B, 25B에서 금전동으로 편입되는 지역을 포함한 전 지역
- 옥계동 : 산동면의 17B,18B에서 편입되는 지역과 종래의 옥계동 전 지역

라. 참고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제3항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관 중 현

○ 본 조례안은

- 『e-편한세상』 과 『우미린』 등 2개 아파트 1,822세대가 산동면과 양포동으로 행정구역이 나뉘어져 있어, 주민생활 불편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지역실정에 맞게 경계를 조정하는 개정 조례안 임

○ 주요 내용은

- 산동면(신당리, 봉산리)과 양포동(옥계, 구포, 금전)간의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는 것으로서
- 산동면의 관할구역은 종래의 산동면중 옥계 17B, 18B, 26B, 27B 으로 편입되는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으로

- 구포동은 종래의 금전동중 23B으로 편입되는 지역과 종래의 구포동중 금전동의 24B, 25B으로 편입되는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으로
- 금전동은 산동면의 26B, 27B중 금전동으로 편입되는 지역과 종래 금전동의 23B에서 구포동으로 편입되는 지역을 제외하고 구포동중 24B, 25B에서 금전동으로 편입되는 지역을 포함한 전 지역으로
- 옥계동은 산동면에서 편입되는 17B, 18B 지역과 종래의 옥계동 전 지역으로 조정하는 것임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지난 8월 산동면·양포동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관한 청원이 접수되어 제136회 임시회시 청원에 관한 의견서를 채택, 구미시에 이송 처리할 것을 의결한 바 있음
(산동면·양포동 경계조정 대책위원회 대표 최형우 외 1,244인)
- 따라서 행정구역 경계조정이 의견서 채택 내용과 같이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였는지, 또한 생활권과 학군, 지역개발, 주민편익 등 일정기준에 의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정이 되었는지의 여부 등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